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과와 국립정치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문학과 간의 복수학위협정서 (DUAL DEGREE AGREEMENT)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과(이하 “동아시아학과”)와 국립정치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문학과(이하 “한국어문학과”)는 국제적 관례에 따른 상호 이해에 바탕을 두고 아래와 같은 지침에 따라 복수학위 협정을 실행해 나가는데 상호 동의한다.

1. 총칙

- 1.1. 본 협정서는 동아시아학과(중국학생 제외)와 한국어문학과(한국학생 제외)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1.2. 양교는 복수학위과정을 위해 연간 2명 이하의 학생을 각각 파견한다.
- 1.3. 양교는 학생의 학업능력, 인성, 언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복수학위과정생을 선발한다.
- 1.4. 양교에서 정하는 수료학점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용대학의 학사제도를 따른다.
- 1.5. 양교는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고 소정의 학위청구논문절차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1.6. 양교는 성적 또는 학위논문심사 결과 통보 등 학위취득에 필요한 행정 사항에 양교의 학사제도와 일정을 존중하여 상호 협조한다.

2. 학생선발

- 2.1. 복수학위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의 선발 기준에 따라 파견 대학에서 추천하고, 수용대학에서 확정한다.
 - 1) 파견대학의 석사학위과정을 최소 1학기 이상 이수자 중
 - 2) 수학능력이 우수한 자
- 2.2. 수용대학은 파견대학이 추천한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나, 수용대학에서 교육과정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 2.3. 양교는 학생들의 선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대교에 제공해야 한다.

3. 교육과정 및 학사지도

- 3.1. 동아시아학과는 교육과정 편성시기를 고려하여 매학기 일정 과목을 제공한다.
 - 3.1.1. 동아시아학과는 한국어문학과 학생이 성균관대학교내 다른 학과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
- 3.2. 한국어문학과는 교육과정 편성시기를 고려하여 매학기 일정 과목을 제공한다.
 - 3.2.1. 한국어문학과는 동아시아학과 학생이 국립정치대학교내 다른 학과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
- 3.3. 양교는 교육과정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대교와 수용학생에게 통보한다.
- 3.4. 양교는 학생의 이수과목 선정과 논문 주제를 결정하고 수용대학에서의 취득학점 인정을 책임질 지도교수를 한명씩 선정한다.

4. 학위논문

- 4.1.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중국어 및 영어 초록 포함)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양교에서 각각 심사한다.
- 4.2. 양교의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각각 구성하되, 양교의 공동 지도교수는 반드시 포함한다.
- 4.3. 수용대학은 수용학생에 대한 학위취득 요건을 완화 또는 제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교간 보조 협약에 따른다.
- 4.4. 양교의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동아시아학과는 분야에 따라 철학, 문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또는 동아시아학 석사학위를, 한국어문학과는 문학석사학위를 수여한다.

5. 등록 및 비용

- 5.1. 학생은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2개 학기를 상대교에서 수학하되, 학위취득 최종 학기에는 소속 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 5.2. 학생은 파견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용대학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5.3. 수용대학은 학생이 숙소를 정하는데 적절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며, 숙소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 5.4. 기숙사비, 식비, 여비, 교재비, 교통비, 증명서류 비용, 비자 비용 등의 지출비용은 학생 개인이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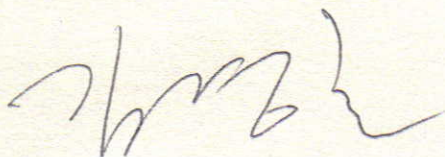
6. 특례

- 6.1. 복수학위과정 파견생이 2명 미만인 경우,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교환 학생 또는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여 파견할 수 있으며 수용대학은 이에 따른 교육편의를 제공한다.

7. 부칙

- 7.1. 본 협정서는 양교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협정기한이 만기가 되었을 때, 만약 쌍방의 동의로 협정을 계속한다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만일 어느 일방이 조항의 개정이나 종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에게 통지한다.
- 7.2. 본 협정서에 미진한 부분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며, 보충 협의와 본 협의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7.3. 본 협정을 집행 중에 양교가 불예측한 요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쟁론, 이의 및 분규는 양교의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
- 7.4. 본 협정서는 한글과 중국어 각 2부로 하며, 양교가 각각 한글과 중국어 1부씩 보관하며,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과장
김 경 호 교수



서명일: 2014. 5. 16.

국립정치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문학과장
곽 추 문 교수



서명일: 2014. 5. 16